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81
----------	------

2020년 2월 26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김인호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년 2월 26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인호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는 교육안전의 범위로 보건 안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건안전에는 ‘약물 오남용 예방’을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학교보건법」 상 학생의 보건관리 규정이 기존 ‘약물 오남용 예방’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의 범위를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에서 “질병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제5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김인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281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과 관련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안전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5조제5호도 교육안전의 범위로 보건안전을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9년 12월 10일 「학교보건법」 제9조가(시행일: 2020. 6. 11.) 보건교육의 종류로 현행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대검찰청 「2018 마약류 범죄 백서」의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에서 나타나듯 19세 이하 연령에서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표]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미 상	합계
2014	102	1,174	2,640	3,542	1,768	603	155	9,984
	(1.0)	(11.8)	(26.4)	(35.5)	(17.7)	(6.0)	(1.6)	(100)
2015	128	1,305	2,878	4,099	2,190	1,124	192	11,916
	(1.1)	(10.9)	(24.2)	(34.4)	(18.4)	(9.4)	(1.6)	(100)
2016	121	1,842	3,526	4,496	2,659	1,378	192	14,214
	(0.9)	(13.0)	(24.8)	(31.6)	(18.7)	(9.7)	(1.3)	(100)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8)	(15.0)	(26.0)	(27.8)	(18.3)	(10.6)	(1.5)	(100)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는 구성비 %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약물 범위에 “마약류”를¹⁾ 명시함으로써 보건교육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 2020.2.1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약물오남용”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보건안전 : 질병과 <u>약물오남용</u>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p> <p>6. ~ 8. (생 략)</p>	<p>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마약류를 포</u> <u>함한 약물 오남용</u> -----</p> <p>-----</p> <p>6. ~ 8. (현행과 같음)</p>